

제314회 시의회 임시회
도시안전건설위원회
2022.9.20.(화) 10:00



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

2022. 9. 20.(화)

안 전 총 괄 실

(도 로 계 획 과)

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

1. 보고경위

- 가. '07.7.31 최초 제안되고, '22.2.25 수정제안된 평창터널 민간 투자사업에 대해 '22.7.29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 관리센터(PIMAC)에 적격성재조사를 의뢰하고,
- 나. 「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14조 제4호에 따라 조사 의뢰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립니다.

2. 수정제안 개요

가.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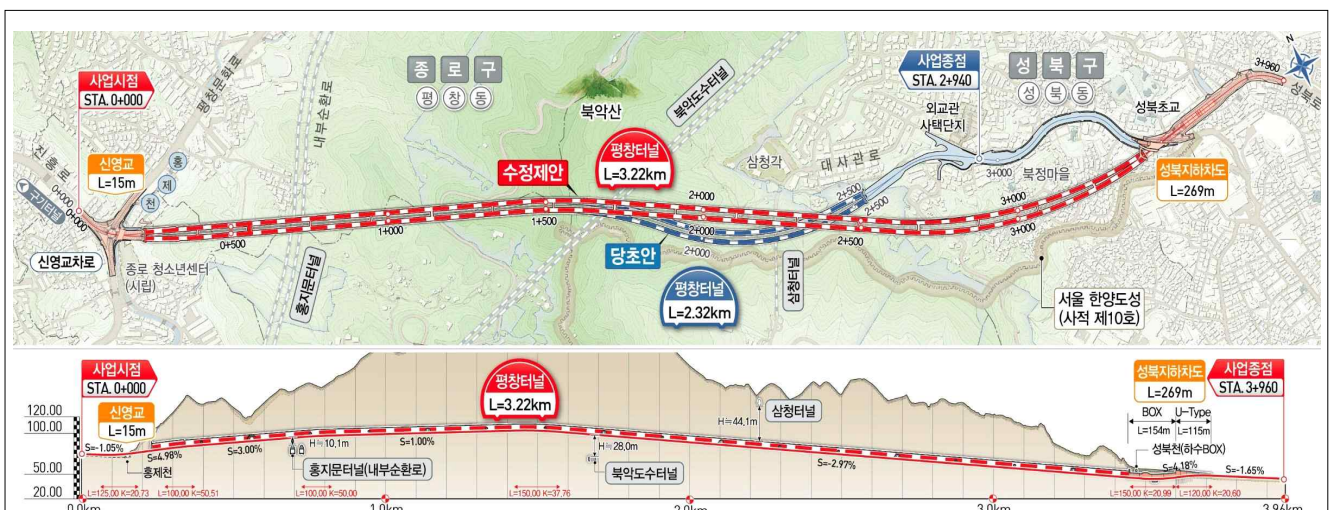
- 사업위치 : 종로구 신영동 (신영삼거리) ~ 성북구 성북동 (성북초교)
- 사업규모 : 양방향 4차로, L=3.96km (소형차전용도로)
- 총사업비 : 3,017억원 ('21.9월 불변가)
 - 민간 1,456억원, 시비 1,561억원 (건설보조금 855억원, 보상비 706억)
- 사업기간 : 공사기간 60개월 / 운영기간 40년
- 사업방식 : BTO 방식 (건설-이전-운영)
- 제 안 자 : (가칭)평창터널주식회사 - (주)태영건설

나. 추진경위

- '07. 7.31 : 민간제안서 제출
- '09. 5. 7 : 시의회 동의
- '09. 9. 4 :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- '10. 8.20 : 재정계획심의위원회 ☞ 재심의
- '21. 5. 4 : 노선 재수립 검토 요청 (市 → 우선협상대상자)
- '22. 2.25 : 수정제안 제출 (우선협상대상자 → 市)
- '22. 1.~5. : 기획재정부,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협의
- '22. 7. 29 : PIMAC 민자적격성 재조사 의뢰

다. 사업중단 요인 및 개선방안

- (중단요인) 한양도성 등 지역 문화재 훼손 우려, 진출입구 외교관사택 단지 근접, 대형차 동행 환경 우려
- (개선방안) 한양도성 이격, **중점부 이동**(외교관사택단지→성북초교 앞), **소형차전용도로 도입** 등



라. 수정제안 세부내용 비교

(’21.9월 불변가)

구 분	주 요 내 용	
	당초	변경
제 안 자	(가칭)평창터널주식회사	
추 진 방 식	BTO(Build-Transfer-Operation)	
적 용 차 종	전차종	소형차전용
시 설 규 모	L=2.96km 터널 1개소(2,320m) 교량 2개소(40m)	L=3.96km 터널 1개소(3,216m) 교량 1개소(15m) 지하차도 1개소(269m)
총 사 업 비	2,031억원	3,017억원
민 간 사 업 비	1,453억원	1,456억원
재 정 지 원 금 (보상비 포함)	578억원 (464억원)	1,561억원 (706억원)
운 영 비 (법인세 제외)	902억원	1,474억원
통 행 료	1,500원	1,500원
공 사 기 간	48개월	60개월
운 영 기 간	30년	40년
사 업 수 익 륜 (세전)	6.38%	4.10%
B/C	1.51	1.32
평 균 교 통 량	29,895대/일	23,934대/일
부속사업 / 최소운영수입보장	해당없음	

마. 출자자 구성 현황

출 자 자	지 분 율	비 고
한강에셋자산운용(주) [(가칭)한강평창터널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의 예정 집합투자업자]	70.0%	재무적출자자
(주)태영건설 외 2개사*	30.0%	건설출자자

* 두산건설(주), 삼부토건(주)

바. 출자자의 재원조달계획

- 출자자들은 본 사업에 필요한 총민간투자비의 15% 수준인 267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투입할 예정이며, 건설출자자의 자기자본 80억원을 선투입한 후에 재무적출자자의 자기자본 187억원을 투입할 계획임.

사. 사업효과

- 서울 서북부와 성북지역을 직결하는 도로망 구축으로 통행여건 개선
 - 성북구 ↔ 인천공항 통행시간 약11분(80분 → 69분) 단축 및 율곡로 등 도심 교통량 분산효과
- 건설에 따른 고용창출 약 5,476명, 총 편익 약 9,692억원 발생

아. 향후 추진계획

- '23.상반기 : 민자적격성 재조사 완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
-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(기획재정부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민자사업팀 이상원 (☎ 2133-8075)

위치도

